

## 학교법인경동대학교개방이사추천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제정 2008. 03. 26 개정 2013. 03. 01  
개정 2018. 02. 07 개정 2018. 10. 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경동대학교정관 제20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추천위원회는 경동대학교 대학평의회에 둔다.

제3조 (구성) ①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동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개정 2013. 03. 01)
2. (삭제 2013. 03. 01)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경동대학교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추천) ① 대학평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대학 평의회 의장이 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3. 01)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기구대표는 추천위원회 위원수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후임 위원을 추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3. 01)

제5조 (위원장 등) ① 추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 위원임기와 같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임기)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이사장으로부터 개방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대상자에 대한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학평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자의 경우는 단수로 한다. (개정 2013. 03. 01)

제8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추천위원회는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이 적어도 7일 전에 회의 목적, 시간,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 02. 07)

② 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은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 02. 07)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격지에 위치한 캠퍼스 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29)

제9조 (회의록 작성)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을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02. 07)

제10조 (간사) 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